

2024 공정경쟁 자율준수편람

KT는 공정경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니다.



2024 공정경쟁 자율준수편람

CONTENTS



공정경쟁 개요

- | | |
|-------------|----|
| 01. 공정경쟁 개요 | 05 |
|-------------|----|



공정거래 관련법

- | | |
|-------------------|----|
| 01.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법령 | 08 |
| 02. 공정거래법 | 09 |
| 03. 하도급법 | 21 |
| 04. 대리점법 | 34 |
| 05. 표시광고법 | 41 |
| 06. 전자상거래법 | 49 |



KT는 공정경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니다



III



통신시장 관련법

01. 방송통신위원회와 소관법령	56
02. 전기통신사업법	59
03. 단말기유통법	65
04. 정보통신망법(불법스팸)	71

IV



개인정보 관련법

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법령	77
02. 개인정보보호법	79

I

공정경쟁 개요

01. 공정경쟁 개요

01. 공정경쟁 개요

공정경쟁의 목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시장기능 저해행위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의사와 창의로 경제활동을 영위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균형 있는 경제발전 도모



공정경쟁의 주요 요소

• 자유로운 경쟁

사업자가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상호간 자유로운 경쟁이 방해되지 않을 것

• 경쟁수단의 공정성

가격, 품질, 서비스를 경쟁수단으로 하여 질서 있는 자유경쟁이 이루어질 것

•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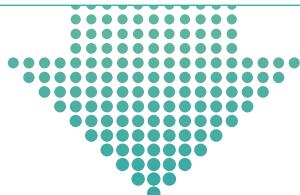
거래 참여의 자유, 거래 선택의 자유 및 거래조건 설정의 자유가 보장될 것



KT와 공정경쟁

공정경쟁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 사규 제정, 공정경쟁 자율준수편람 제작/배포, 공정경쟁 교육 실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역량 확보

공정경쟁 규제리스크 최소화
기업이미지 제고

II

공정거래 관련법

-
- 01.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법령
 - 02. 공정거래법
 - 03. 하도급법
 - 04. 대리점법
 - 05. 표시광고법
 - 06. 전자상거래법

01.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1심법원의 기능 수행).

1. 위원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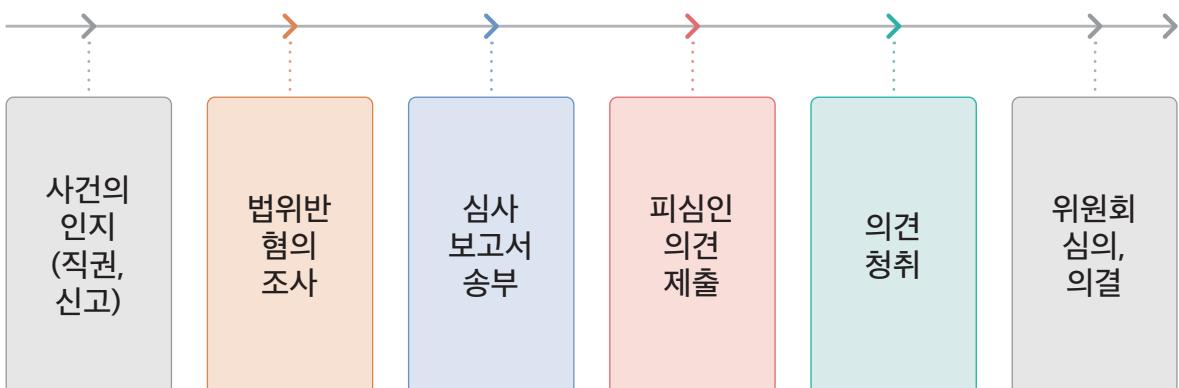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상임/비상임)

- **전원회의** | 9인 참석, 기업결합심사/담합 등 중대사건 심의
- **소회의** | 상임 2인, 비상임 1인 참석, 소비자관련 등 경미사건 심의

조직

-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 사건처리절차



※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01.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법

독과점, 담합,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보호

甲乙관계 규제

하도급법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권리 보장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유통과정에서 공급자와 대리점간 균형있는 발전 도모

소비자 보호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자, 국가에 책무 부여

표시광고법

부당광고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보호

약관규제법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규제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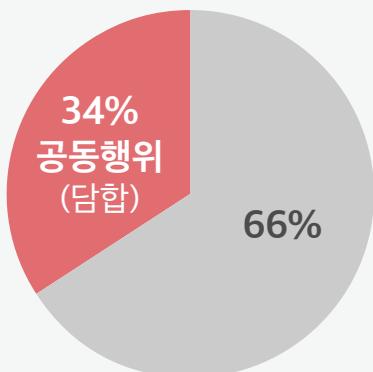
공정거래법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가격, 공급물량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담합” 또는 “카르텔”이라고도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 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의 암(癌)**”으로 비유되며,
기업의 신기술, 신상품 개발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선택권 없이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과징금, 법인/개인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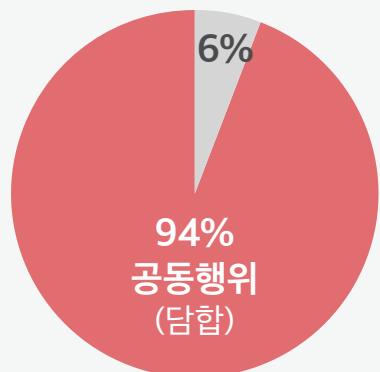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제재

총 803건 중 273건이
카르텔 사건



과징금 부과 현황

총 8,038건 중 7,560억 원이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기준 :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2016년 기준

“부당한 공동행위”는 1)가격 결정·유지·변경, 2)거래조건 설정, 3)거래제한, 4)시장분할, 5)설비제한, 6)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7)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8)입찰담합, 9) 정보교환 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주요유형(경성담합)

가격 담합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 인하금액(비율),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예) 제과회사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10%씩 인상하기로 합의
공급제한 담합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시장점유율 유지 등) 예) 석도강판업체들이 사업자간 시장점유율을 합의한 행위
시장분할 담합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게 하는 행위 예) 닭고기 도계육 사업자들이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
입찰 담합	입찰 가격을 사전 합의하거나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 예) 건설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업체와 낙찰가를 합의하여 입찰 참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합의”는 **직접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가격/수량/입찰 등과 관련된 **정보교환** 또한 포함될 수 있으며, 합의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직접적 서면증거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간 회합, 연락 정황 및 경제적 증거** 등 정황증거도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 합의

직접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 (예. 합의서, 회의록, 이메일 등)합의의 성립 또는 그 내용에 관한 진술 증거묵시적 합의 내지 공감대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기타 물증
정황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쟁업체 간 회합, 의사연락 등 합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 정보교환 증거, 신용카드 전표, 통화기록)경제적 증거<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시장구조② 가격 등 경쟁조건의 일치③ 합의가 없다면 나타나지 않을 각자의 이익에 반하는 시장행위

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정보교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보교환**”은 1)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합의가 있고,

- 2) 그 합의 실행결과 시장의 경쟁이 실제로 제한되며,
3) 별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규율대상)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0% 한도에서 부과

형사 제재 (검찰고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당업체 제재

정부 발주 입찰건에 대해
담합하는 경우,
공공기관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국가계약법 제27조)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기업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관련 임직원)에게도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과징금의 한도를 2배 상향하여

관련 매출액의 20%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KT 주요 사례

● 2005년 시내전화 사업자담합

KT, 하나로텔레콤은 정통부 행정지도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조절하기로 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요금에 대해 저가할인 덤팡을 하지 않기로 합의
→ 가격경쟁 및 번호이동성 이행에 따른 가입자유치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1,130억원 부과

● 2013년 SMRT몰 입찰담합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사 및 전동차 IT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KT와 포스코 ICT 컨소시엄은 사업권 수주를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둘러리 입찰을 하도록 사전에 합의
→ 하도급업체를 통한 제안서 전달 등 세부사항 합의 인정, 과징금 71.5억원 부과 및 고발조치(법인, 개인)

● 2019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LGU+, SKB, 세종텔레콤 4개사는 '17.6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둘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
→ 낙찰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에게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는 등 합의의 대가 지급
→ 과징금 57.4억원 부과 및 고발조치(법인, 개인)

경쟁사업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상 필요한 접촉 시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제의를 받거나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을 경우, 참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상급자 및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즉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02.

공정거래법 - 불공정행위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제 45조)

9가지 주요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경우,
회사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공급하지 않는 사례

공동의 거래거절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 중단 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기타의 거래거절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래 거절, 중단 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2. 차별적 취급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 가격 등 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여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소금제조사가 A 대리점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고 B 대리점에서는 100%로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간 현금결제비율을 달리하고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한 사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거래조건 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가격 이외의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차별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사업자간 자기의 계열회사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차별하는 행위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 A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한 사례

부당염매

계속적 염매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일시적 염매

일회 또는 단기간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부당고가 매입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 및 공급하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자신의 상품·용역 또는 경쟁사업자 상품·용역을 실제와 다르게 오인 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계약성립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끼워팔기

서로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사원판매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품·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단, 판매 영역을 담당하는 임지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원판매 적용대상 아님

기타의 거래강제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지위남용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유명 브랜드 전자제품 제조사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이나 상대방의 주문의사에 상관없이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

구입 강제

거래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구입하도록 강제

이익제공 강요

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판매목표 강제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인사,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 조건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사업자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자가 여러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자기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거래처로 옮기려는 업체에 대하여 담보 해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근거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거래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린 사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

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기타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

9. 부당한 지원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지원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되고,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 및 공정경쟁 훼손 초래

지원행위

자금, 자산, 인력, 상품, 용역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거래 또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정상가격(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 시 적용되는 가격) 대비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부당성

지원객체(지원받은 회사)가 속한 시장에 공정한 거래가 저해

부당한 자금거래

- 계열회사에게 시중금리 보다 상당히 저리로 자금대여
- 계열회사에게 연체 이자율을 0%로 하여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

부당한 자산, 인력, 상품, 용역 거래

- 계열회사에게 주변 시세보다 부동산 임대료를 상당히 낮게 받는 행위
- 계열회사에게 인력을 제공하면서 인건비는 자사가 부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통행세")

- 타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유리함에도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를 거쳐서 거래
-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

02.

공정거래법 - 불공정행위

위법성 심사기준

공정위는 당해 행위가 “**공정거래 저해 우려(부당성)**”가 있는지에 여부를 판단할 때 “**불공정성**”과 “**경쟁제한성**”으로 세분화하여 심사합니다.

불공정성

정당하지 않은 경쟁수단 및 거래내용으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가?

(단,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공정거래저해성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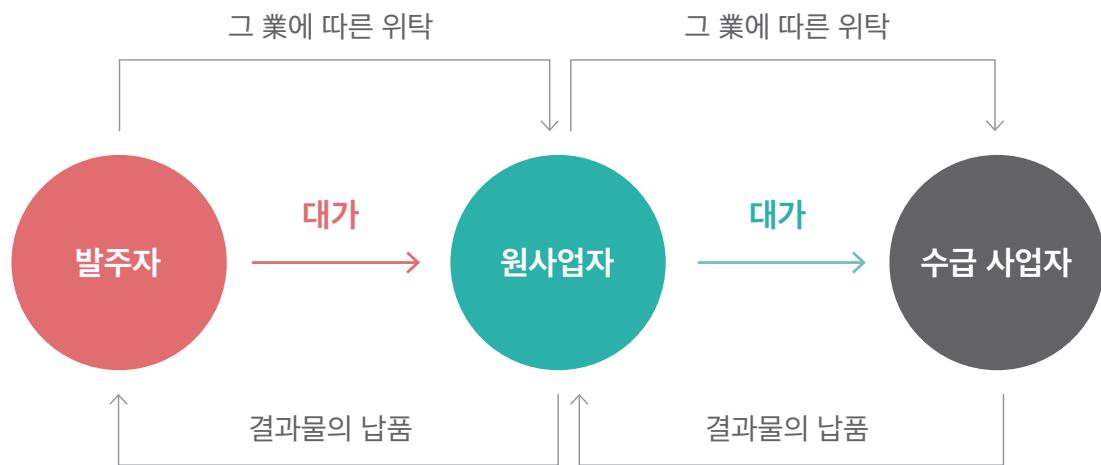
(단, 소비자후생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현저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	위반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의 4%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부당한 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경우 지원금액(법위반 금액)의 160% 이하 과징금 부과
벌칙 (양벌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부당지원의 경우 3년/2억원)

03. 하도급법-개요

“하도급 거래”란 **대기업**(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이 이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적용거래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03.

하도급법-의무사항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서면의 발급 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시작 전에 수급자에게 발급

① 서면 기재사항

- 목적물 /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 원자료 제공시 원자재 품명, 수령, 제공일, 대가 및 지급방법, 지급기일
- 원자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대금연동제' 참고)

② 하도급거래 관련서류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전자문서 포함)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이를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되, 그 사유와 해당 사항이 정해질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함.
-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자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2. 선급금의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는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 자연이자(연 15.5%), 어음할인율(7.5%) 지급

Self Check!!

- 선급금을 지급받은 내용(현금 또는 어음)과 비율에 따라 지급했나요?
-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했나요?
- 자연지급했다면 자연이자를 지급했나요?

3. 검사 및 결과 통지 의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는 서면 통지하고, 목적물 검사 기준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Self Check!!

-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으로 불합격처리 하지는 않았나요?
- 양사 간 정한 검사기준을 당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했나요?
- 업계의 통상적인 검사기준보다 과다하게 정하여 불합격 처리했나요?

4.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

- ✓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 ✓ 수주사업의 경우, **발주자(고객사)가 당사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Self Check!!

- 하도급대금 법정지급일 초과에 대한 어음할인료나 자연이자를 지급했나요?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나요?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발주처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 가능

☑ Self Check!!

-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실을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했나요?
- 발주처로부터 증액 받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조정했나요?
- 발주처로부터 물가변동 관련 대금 증액을 받은 경우 대금을 조정했나요?

6.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변동되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가능



☑ Self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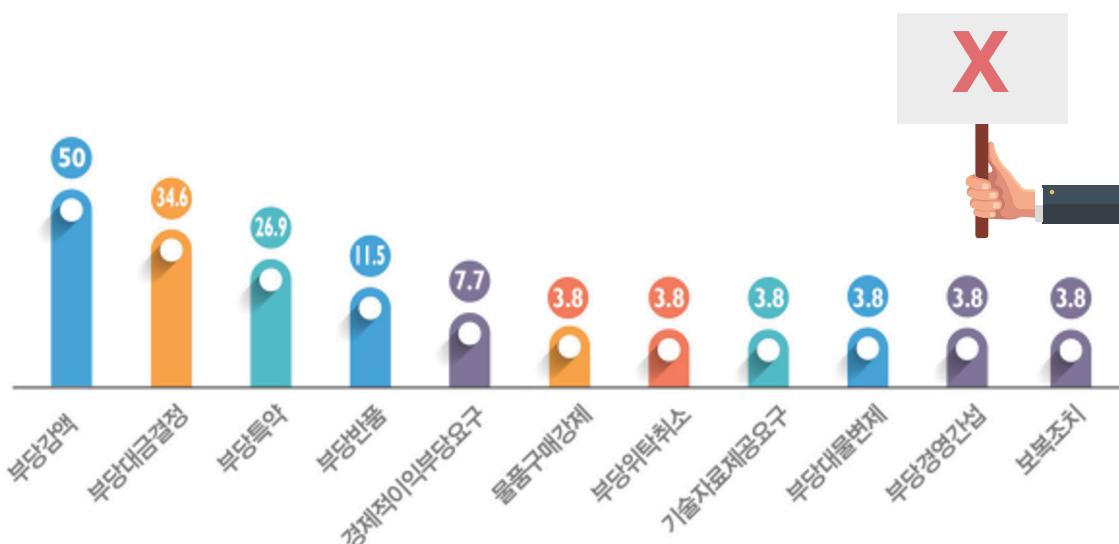
- 수급사업자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했나요?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했나요?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에 도달했나요?

03.

하도급법-금지사항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규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금지사항 위반행위 빈도(단위: %, 중복 선택)



조항	내용	조항	내용
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17조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10조	부당반품의 금지	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1조	감액 금지	19조	보복조치의 금지
		20조	탈법행위의 금지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

- ✓ 민원처리, 설계변경 비용이나 계약서에 없는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Self Check!!

- 서면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발생 비용을 부담시켰나요?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있나요?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있나요?

2.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Self Check!!

-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나요?
- 경쟁입찰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나요?
-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 할당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나요?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물품이나 장비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 품질유지, 개선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Self Check!!

-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임대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했나요?
- 발주처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구매를 강요했나요?
-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와 관련된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등의 강요를 했나요?

4.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위탁취소(변경) 또는 목적물 수령거부(지연) 행위 금지



☑ Self Check!!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않고 납기지연을 주장하며 수령을 거부했나요?
- 수령한 물품의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수령을 거부했나요?
-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를 했나요?

5. 부당한 반품 금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한 목적물 수령 이후 반품 금지

☑ Self Check!!

- 발주처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했나요?
- 검사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하여 목적물을 불합격 판정하고 이를 반품했나요?
- 당사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했나요?

6. 하도급 대금 감액 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 금지

☑ Self Check!!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 했나요?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에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을 했나요?
- 당사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했나요?

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Self Check!!

-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나요?
- 하도급거래 개시를 조건으로 협찬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나요?
- 법률상 수급사업자가 부담 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8.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기술자료란 ?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예시)

- 공동 특허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한 자료 요구
- 공동 기술개발 약정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 요구
- 제품 하자 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관련 기술자료 요구

기술요구서 발급 의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반환 및 폐기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함

KATE > 경영지원 > Tech Care에서 발급 가능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Self Check!!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 받기 전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했나요?
-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내 타부서에 무단 공유했나요?
- 사용이 완료된 기술자료를 반납 또는 폐기 했나요?

9.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물품으로 대금 지급 금지



☑ Self Check!!

-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토지, 아파트, 회원권 등으로 지급했나요?
-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면, 양사가 해당 사항을 전제로 계약했나요?
- 수급사업자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하게 했나요?

10.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가 자신의 사적 이득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에 부당한 간섭 금지

☑ Self Check!!

- 수급사업자 임직원의 선임·해임 등 인사에 간섭한 적이 있나요?
- 수급사업자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나요?
- 수급사업자의 원가자료, 매출 정보, 영업관련 정보 등을 요구했나요?

11. 보복조치 금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등 불이익 제공 금지



☑ Self Check!!

- 분쟁조정 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이유로 발주물량을 축소했나요?
-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정지했나요?
-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나요?

12. 탈법행위 금지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



☑ Self Check!!

-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회수한 적이 있나요?
- 지연이자 지급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나요?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를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03.

하도급법 - 정리

의무사항/금지사항 정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甲乙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Win-Win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 ①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 ②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③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 거부의 금지
-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 ⑤ 부당반품의 금지
- ⑥ 부당감액의 금지
- ⑦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⑧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⑩ 보복조치의 금지
- ⑪ 탈법행위의 금지

계약 이행

계약 체결

- ① 서면교부 및 보존 의무
- ② 부당특약 금지
-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대금 지급

- ① 선금금의 지급 의무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
- ③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④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⑤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⑥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⑦ 물품구매대금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03.

하도급법 - '23년 신설 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WHO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

WHAT.....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지급기간 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WHEN**

..... 반기 말의 다음날로부터 45일 이내 (상반기 ~8.14, 하반기 ~2.14)

법정 지급기한(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지급건**이 공시에 의해
규제기관 및 외부에 노출되므로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 필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납품대금연동제(상생협력법)



주요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원사업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일정비율 이상(10% 이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미리 약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

03.

하도급법 - 제재사항

법 위반 시 제재사항

법 위반에 따라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법인 및 개인 고발 가능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 :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과태료 부과 : 2억원 이하 입찰참가 제한 : 3년간 벌점 5점 초과 시 영업정지 요청 : 3년간 벌점 10점 초과 시
사법적 제재 (공정위 전속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개인 고발 가능(양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 행위 3억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 - 보복조치, 탈법행위 금지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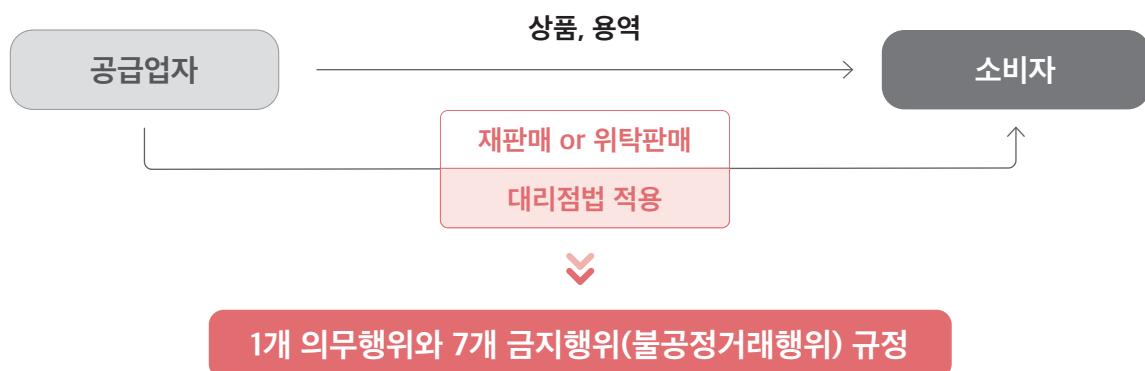
유형	경고 (서면)	경고 (신고/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

※ (예시) 과거 사건으로 시정권고(1.0점)를 받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으로 시정명령(2.0점) 및 과징금(2.5점) 부과 시, 누계 5.5점으로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가능함

04.

대리점법 - 개요

OO유업 밀어내기 사건(2013.5월) 이후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하 대리점법, 2016.12.23 시행)



구분	조항	내용	비고	
의무사항	5조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행위)	6조	구입강제 금지	공정거래법 거래상지 위남용 (제45조 제1항6호)	
	7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		
	8조	판매목표 강제 금지		
	9조	불이익제공 금지		
	10조	경영간섭 금지		
	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12조	보복조치 금지		

04.

대리점법 -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의무사항

서면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기재 내용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납품방법, 반품조건, 계약해지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판매장려금 지급 사항 등

보관 의무

대리점과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

금지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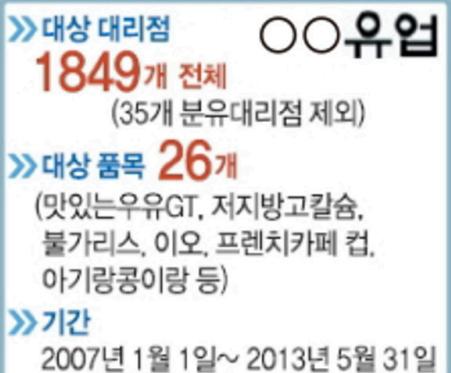
1. 구입강제 금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예시) 할당 출고 등 판매부진, 비인기제품 밀어내기

“부득이 금일부터 할당 출고를 하겠습니다. 대리점의 양해를 구합니다.”

OO유업 밀어내기(강매) 조사 결과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참답한 심정이었습니다.
OO유업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업을 위한 관행이었다 해도 밀어내기 등 출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암중한 질책, 가슴앓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희는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고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평등한 상생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참된 판점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000여개 대리점주들과 저해를 모아 마침내 업계최초로
이례와 같은 상생안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생안이 모든 기업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희 OO유업은 철저히 실천에 나갈 것입니다.

Self Check!!

- 신제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품, 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 상품·용역을 대리점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바 있는가?

2.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Self Check!!

- 판매촉진행사 등 사유로 대리점에게 비용·인력 등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기타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한 바 있는가?

3. 판매목표 강제 금지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시 수수료를 차감하는 행위 금지

20XX년 0월 목표 : 신규가입 10건
판매시(건당+10만원), 미달시(건당 -10만원)

20XX년 0월, 3건 판매한 A대리점 수수료 정산 내역



대리점이 판매 활동(판매 3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감지표 운영(미달 7건)으로 결과적으로

대리점이 불이익 받는 구조(40반원 차감)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판매장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Self Check!!

- 판매목표 미달 시, 단말 차별 공급,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 차감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한 바 있는가?

4. 불이익 제공 금지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하는 행위 금지

☒ Self Check!!

-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공급, 영업지원을 중단·제한하거나 판매장려금 삭감·미지급, 반품 거부, 비용전가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는가?

5. 경영간섭 금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

☒ Self Check!!

- 대리점 영업시간 연장, 판촉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바 있는가?

6. 주문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금지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행위 금지

☒ Self Check!!

- 대리점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거부 또는 회피한 바 있는가?

7. 보복행위 금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Self Check!!

- 분쟁조정 신청 또는 규제기관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바 있는가?



04. 대리점법 - 정리

금지행위 유형별 사례

구입강제

1. 대리점이 특정 상품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조성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
3.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
4.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1.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촉행사의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
2.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or 일부를 대리점에 분담하도록 강요
3.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 근무하도록 강요
4. 기부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
5.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부담하도록 강요
6. 대리점 거래에 수반된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부담하도록 강요

판매목표 강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

1. 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
2. 상품·용역의 공급중단
3. 수수료 차감/미지급
4. 상품·용역의 공급 축소 또는 지연
5.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조정

불이익 제공

1. 계약서 내용 관련 의견 불일치 시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 체결
2.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제한
5. 계약서 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판매장려금을 삭감 또는 미지급
6.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7.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
8. 공급업자 귀책에 의한 반품임에도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

경영활동 간섭

1.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3.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
4.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04.

대리점법 - 제재사항

법 위반 시 제재사항

시정조치	해당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과태료	1천만원 ~ 2억이상
과징금	최대 법위반 금액 부과 [법위반 금액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강제 : 구입강제한 상품 or 용역 금액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 강요한 금전, 물품, 용역 금액 - 판매목표 강제 : 삭감 및 미지급한 판매장려금 금액 - (불이익제공)공급업자의 귀책사유 반품 거부 : 반품을 거부한 물품 금액
형벌(행위자)	징역 : 2년이하 또는 벌금 : 1억5천만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손해액의 3배)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보복조치



회사와 대리점 사업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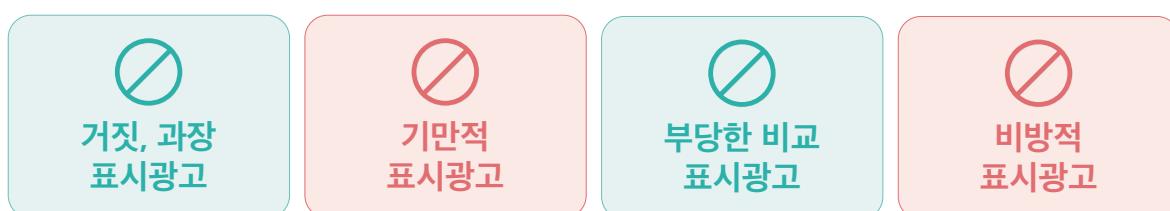
표시광고법 - 개요

표시광고법의 목적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 적용 대상

누구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
무엇을	자기 또는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및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어디에/어떻게	<p>(표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첨가물과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용역 관련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p> <p>(광고)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p>
주요대상	<p>▶ <u>DM, 전단, 팸플릿, 포스터, 동영상(유튜브 등), 블로그 게시물,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FAQ에 게시된 내용 및 배너/팝업 광고 등</u></p>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05.

표시광고법 - 거짓·과장 표시광고

거짓·과장 표시·광고 관련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체크 리스트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 스스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 표시·광고 시에는 공인된 실증자료 구비 필요!

- ▶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 : 예) “소화흡수율 95% 이상”
- ▶ 안전 또는 환경 관련 내용 : 예) “미국 FDA 화장품 ○○ 검사 합격”
- ▶ 성능, 효능, 품질 관련 내용 : 예) “최대 20배 빨라진 속도!”
- ▶ “최저”, “최고”, “최대”, “최초” 등 실증이 어려운 배타적 문구 사용 시 주의 필요



※ 실증자료는 반드시 객관성,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① 법령에 의거하거나, 사업자와 독립된 시험·조사기관에서 실시해야 함
- ② 시험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고 형평성있게 인용해야 함
- ③ 논문은 학계에서 이견 없는 사실(KCI 또는 SCI급)에 대해서만 인용해야 함

법 위반 사례

안마의자 거짓·과장 광고(‘20.7월)

사실 관계

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상품 출시 후 자사 홈페이지, 잡지, 신문 등을 통해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

공정위판단

사업자가 일부 증명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

05.

표시광고법 - 기만적인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사용 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

체크 리스트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누락, 축소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됨

- ▶ 연구나 실험결과 중 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제거하고 유리한 부분만 선별
- ▶ 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
- ▶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적 용어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법 위반 사례

GiGA LTE 기만적 광고(‘19.10월)



사실 관계

KT, GiGA LTE 서비스는 3CA LTE-A와 GIGA WiFi 기술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며, 커버리지는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고 광고

공정위판단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기만광고에 해당

05.

표시광고법 -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 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 ❖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체크 리스트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 경우 **비교대상, 비교방법, 비교기준을 분명하게 밝히고,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 비교대상인 두 제품이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인지?
- ▶ 가격, 성능, 품질 등 비교기준이 양 상품 간 동일하고, 비교기준도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법 위반 사례

락앤락 비교광고(15.2월)

사실 관계

락앤락, 자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문구와 실험영상을 이용해 내열 유리용기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 광고

공정위판단

락앤락이 사용한 실험 영상은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하거나 실험조건을 잘못 기재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열등한 것처럼 광고한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에 해당**

05.

표시광고법 - 비방적인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 ❖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체크 리스트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 상품이 실제보다 훨씬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그 이미지를 증대하게 훼손할 경우 주요 제재 대상

- ▶ 구제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추상적인 표현 사용한 경우가 많음
- ▶ 특정 경쟁사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경쟁업체 일반에 대한 광고 진행 시 문제될 수 있음
- ▶ 경쟁사 영문 사명 첫 글자만을 표기한 경우도 비방 대상 특정성 인정 가능

법 위반 사례

메디톡스 비방광고(‘19.6월)



사실 관계

메디톡스,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

공정위판단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

05. 표시광고법 - 주의사항

제한사항 표기 규제

주된 표시광고에 따른 제한사항의 효과적인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정위 예규, 2018.12.27 시행)

두드러짐

충분히 큰 크기로 기재, 색상은 배경과 뚜렷이 구분, 광고 중 극히 일부분 동안만 노출하여 다른 내용에 함몰되어서는 안됨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내용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어야 함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가적인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 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제시되어서는 안됨

※ 광고 화면 맨 하단에 아주 작은글씨로 제한사항을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를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SNS 광고 규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공정위 예규, 2020.9.1 시행)

광고주로부터 현금,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예) A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협찬광고 등

※ 미공개 시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광고주 등 제재 가능



05.

표시광고법 - 위법성 판단 기준

위법성 판단 기준

표시, 광고 내용이 사실인가?

- 표시·광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야 함
- 표시·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 통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
- 진실성은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고의·과실 유무 불문, 사업자 입증 책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가?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성 여부 객관적으로 판단
-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가?

- 광고 그 자체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05. 표시광고법 - 제재사항

법 위반 시 제재사항

시정조치	위반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
과태료	조사방해 - 최대 2억원(임원/종업원의 경우 5천만원) 그 외 - 최대 1억원(임원/종업원의 경우 1천만원) ※ 중요정보미표시,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불응 등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단, 금액 산정 곤란 시 5억원 이내 부과)
벌칙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시장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다양한 광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체광고, SNS광고, 대리점 판촉물, 홈페이지 배너 등
표시광고물들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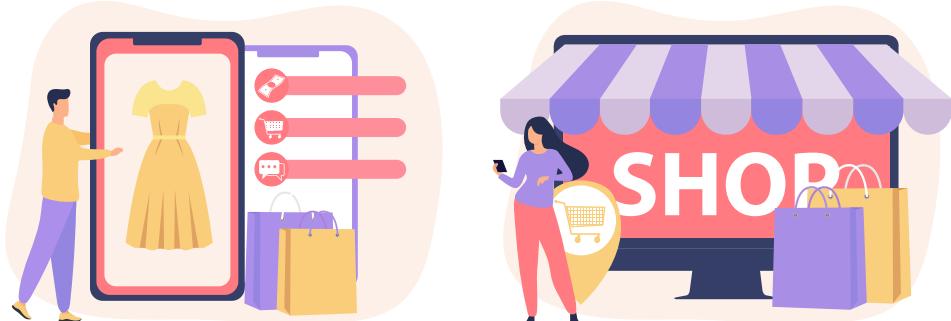
06. 전자상거래법 - 개요



전자적 방식으로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 청약이 이루어지는 거래
주문, 결제, 이행단계 중 하나라도 전자문서가 활용되면 전자상거래에 해당

전자상거래법의 목적

- ✓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구축,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 신뢰제고
- ✓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06.

전자상거래법 - 주요 준수사항

1. 사업자 정보 표시

웹/앱 초기화면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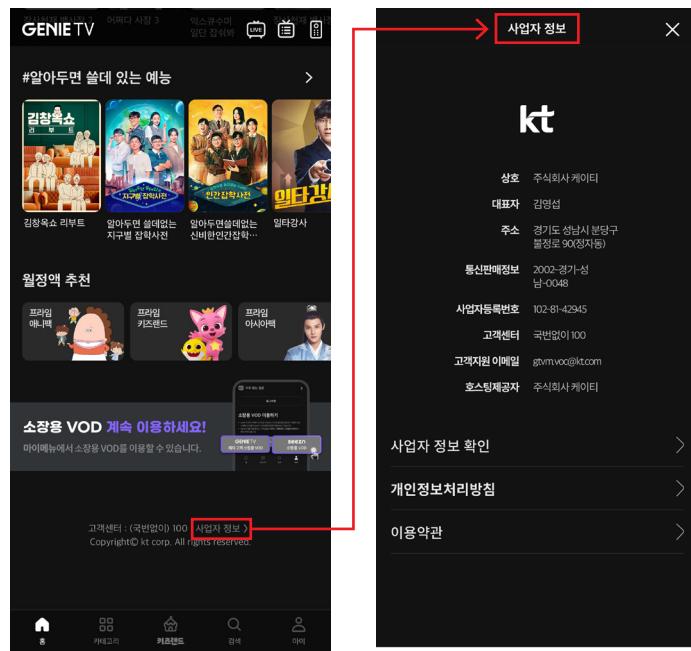
③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 호스팅서비스제공자 상호

<운영자 정보 표시 예>



ⓘ Self Check!!

- 필수 고지사항 6개를 모두 표기하고 있는가?

2. 표시·광고 기록의 보관

거래 기록 보관 및 소비자 열람·보존 방법을 제공해야 함

-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③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Self Check!!

- 거래 기록 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3. 거래조건 표시

거래 관련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표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준수
- 가격, 지급/공급 방법, 청약철회/환불 방법, 분쟁처리 절차 등 제공

<디지털 콘텐츠 상품정보제공 필요사항>

- ① 제작자 또는 공급자
- ② 이용조건, 이용기간
- ③ 상품제공방식(CD, 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 ④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 ⑤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 ⑥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효과



✓ Self Check!!

- 고시에서 정한 위 정보제공 사항을 모두 표기하고 있는가?

4. 미성년 계약 시 추가 고지

미성년자가 계약 시 법정대리인이 미동의 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함

※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는 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고지예시>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Self Check!!

-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및 미동의 시 계약취소가 가능함을 고지하고 있는가?

5. 청약철회 및 환급

상품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청약철회 시 사업자는 대금을 구매자에게 법정 기한 내 환급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있는 재화의 멸실/훼손,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법위반 사례 예시>

- 할인제품은 절대 교환/환불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 12시간 내 불량 문의를 하지 않을 시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환불은 불가합니다.
- 상품 수령 후 7일 내 반품 신청을 해야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 Self Check!!

- 청약철회 관련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6.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통신판매 중개 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실제 통신판매자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분쟁해결 절차마련 필요

<고지예시>

OOO은 통신판매중개자로
오픈마켓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입점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Self Check!!

- 통신판매중개 관련 필수고지 사항 및 분쟁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7. 금지행위

전자상거래법은 아래 사항을 금지하고 있음

- ①. 거짓/과장 사실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 ②. 청약철회, 계약해지 방해 행위
- ③. 청약철회 방해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변경/폐지 행위
- ④. 분쟁, 불만처리 관련 인력, 설비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⑤. 청약이 없거나 거절하는데도 상품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⑥. 소비자 정보를 허락 없이 또는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

✓ Self Check!!

- 거짓/과장 광고, 청약철회 방해 등 금지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06.

전자상거래법 - 제재사항**법위반시 제재**

시정권고,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형벌 등을 부과

제재	세부내용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 ~ 1억원 이하 		
	청약 유인 단계	10조	사업자 정보 표시
		6조	표시 광고의 기록의 보존
	청약단계	13조	거래조건 표시
			미성년계약 시 추가 고지
	청약철회 단계	17조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형벌	통신판매 중계업	20조	통신판매중계업자 고지 등
	금지행위	21조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명령 미이행(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신고 등(3천만원 이하 벌금) • 상호,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허위제공 등(1천만원 이하 벌금) 		

III

통신시장 관련법

-
- 01. 방송통신위원회와 소관법령
 - 02. 전기통신사업법
 - 03. 단말기유통법
 - 04. 정보통신망법(불법스팸)

01.

방송통신위원회와 소관법령

소 개

합의제 행정기구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 공적책임 제고, 이용자편익 증진, 방송통신 균형발전, 국제경쟁력 향상 위해 설립

비 전 (제6기 방통위, '23.8.28~)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정책 목표

-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핵심과제

01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02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
-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

03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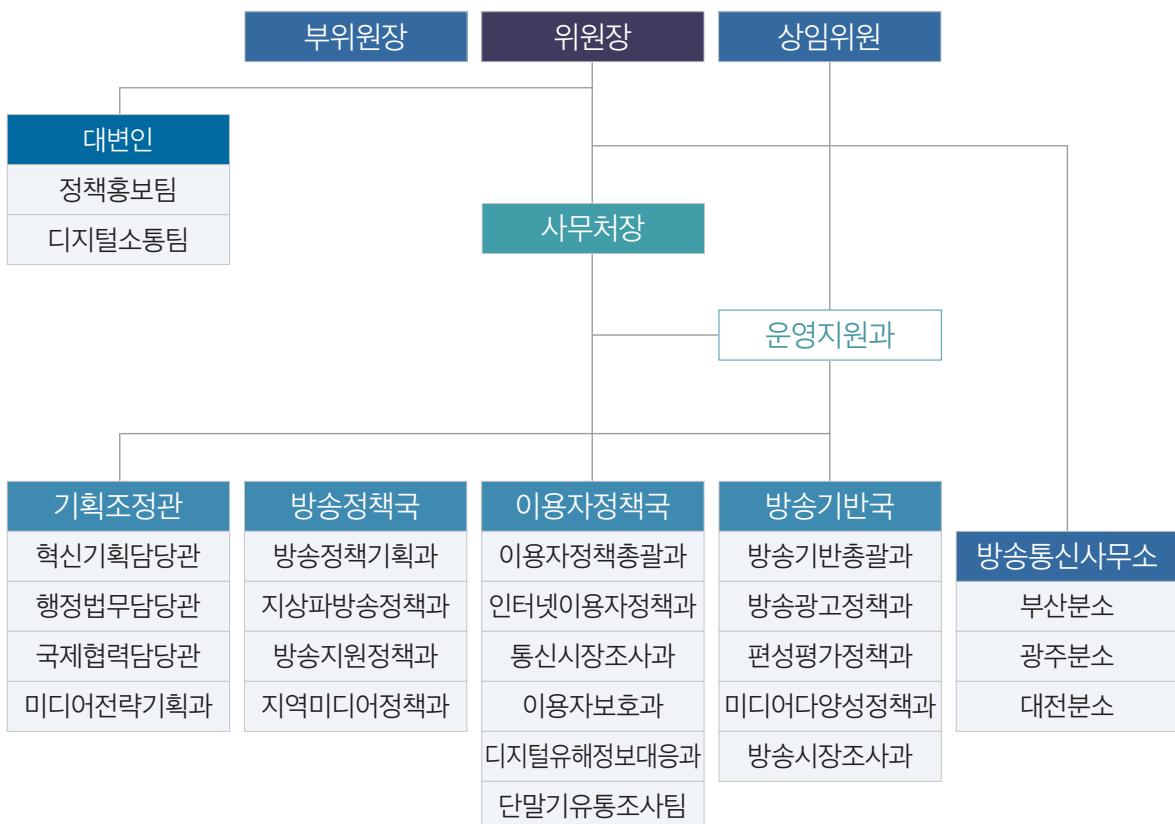
-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강화
-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

기구 및 조직 현황

기 구

- 위원회** |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4인(차관급)
- 사무처** | 1처 3국 2관 19과(담당관) 3팀 / 1소속기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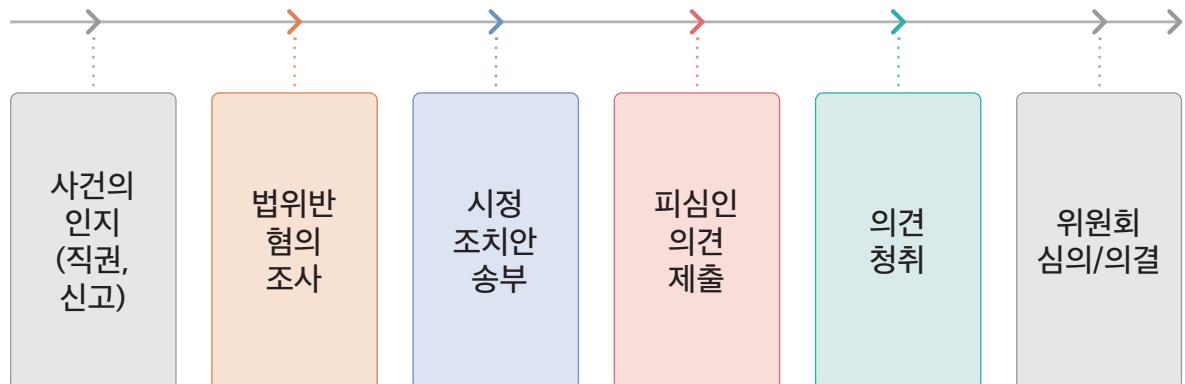


소관법령 / 사건처리절차

소관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경품 제공의 부당차별 기준 고시
 - 결합판매 금지행위 고시
- 단말기유통법
- 전파법
- 방송법
- IPTV법
- 위치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사건처리절차



02.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법령 제50조①

-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해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
- 이중 이용자보호 관련 내용은 **5호 / 5의2호**에 명시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2. 협정 체결의 부당한 거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정의 불이행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
4.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 등의 제공 등 대가의 부당한 산정

5.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5의 2.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

6.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설비 등의 제공 등 대가 결정·유지
7. 디지털콘텐츠 제공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제한 행위
8. 통신단말장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 등 부당하게 제한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침해



중요사항 미고지

금지행위 : 이용약관 위반

관련 법령

- 이용약관 위반의 경우 금지행위 기준은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 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①

5.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규제 사례

이용약관과 다른 요금할인 (2016)

특정 회사에 약관 외 할인(회선별 50% 이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에 허위 입력
→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할인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법 제50조 제1항 5호(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금지행위 : 이용자 이익침해 ①계약 관련 부당행위

관련 법령

- 이용자 이익침해(계약 관련 부당행위) 구체기준은 하위법령(시행령)에 명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 [별표4] 5.

나. 이용계약 체결, 해지, 이용 관련 부당한 행위

-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 체결
-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 의사 확인절차 미이행
-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
- 6) 서비스 **개통 전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제한
- 7)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명의로 개통
-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또는 이용계약 해지
- 9)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 부과**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추가조건 제한 등 해지권 제한**
- 11) 이용자의 자료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규제 사례

갤럭시
노트20
예약가입자
개통지연
(2020)

갤럭시노트20 예약가입자에 대하여 고의로 개통일자 지연
 → 시행령 [별표4] 5.나. (**이용자 이익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KT 과징금 1.6억원 부과

금지행위 : 이용자 이익침해 ②부당한 이용자차별**관련 법령**

- 이용자 이익침해(부당한 이용자차별) 구체기준은 하위법령(시행령)에 명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 [별표4] 5.**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

-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2) 장기이용 또는 다양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규제 사례

결합상품
경품
부당한 제공
(2022)

결합유형, 서비스 종류 등에 따른 경품제공 평균금액이 상하한 15% 범위를 벗어나 이용자 차별이 발생
→ 시행령 [별표4] 5. 마 (부당한 이용자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 KT 과징금 49억 6,800만원 부과

금지행위 : 이용자 이익침해 ③부당한 결합판매

관련 법령

- 이용자 이익침해(부당한 결합판매) 구체기준은 하위법령(시행령)에 명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 [별표4] 5.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의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보다 구체적인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유형 구분 위해 ‘고시’ 제정 ('16.4.6. 시행)

가입단계

- 결합 구성상품 별 할인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음
- 부당한 허위과장광고**

이용단계

- 명시적 서면동이 없이 계약내용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추가

해지단계

- 결합구성상품 이용불가 시 나머지 상품 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부과

결합판매 시 부당한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규제 사례

유선결합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2020)

중요혜택만 표시, 최대 지원 가능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 등 행위
 → 시행령[별표4] 5.바.(**부당한 결합판매**), 결합고시 위반 판단
 → 통신 4사 과징금 8.7억원 부과

금지행위 : 중요사항 미고지

관련 법령

- **중요사항이란?**
 -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해지정책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중요사항 미고지 관련 구체기준도 하위법령(시행령)에 명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 [별표4] 5.의2

-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 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다. 이용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이하 생략)

규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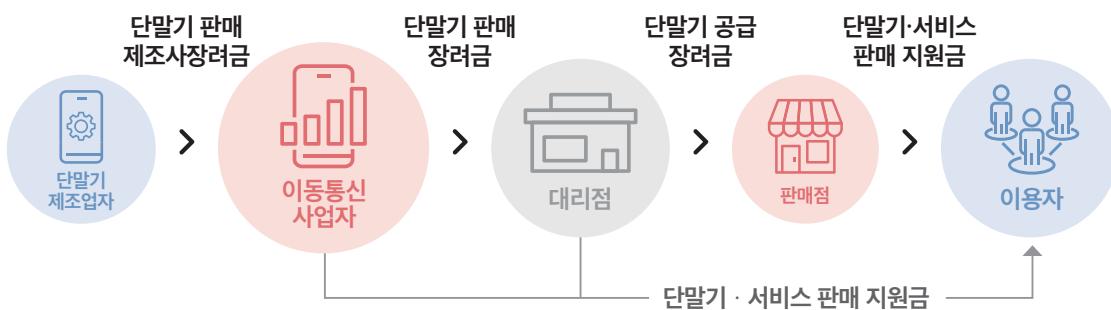
인터넷 속도
저하 미고지
(2021)

인터넷 상품을 선택할 때 개통 시 속도측정 결과는 중요사항이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
→ 시행령[별표4] 5.의2 나.(**중요사항 미고지**) 등 위반 판단
→ KT 과징금 5억원 부과

03.

단말기유통법 - 개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어 무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 차별이 심화되자, 이용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및 가계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하 '단말기유통법', 2014.10.1 시행)



용어정의

장려금

단말기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입니다.

지원금

단말기 구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입니다.

대리점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을 맺고, 통신사-이용자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위탁받은 자로 통상 하나의 이동통신사업자 상품만을 취급합니다.

판매점

대리점과 협정을 맺고 통신사-이용자 계약 체결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 받은 자로, 일반적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03.

단말기유통법 - 사업자 준수사항

공시지원금 제도



① 이용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공시해야 합니다.

- 모든 이용자가 지원받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공시한 대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들이 **차별이 없도록**, 지급받는 지원금이 같아야 합니다. 다만,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추가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30% 범위로 확대하는 법개정 진행 중



이동통신사업자는 유통망에 공시지원금 외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면 안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온 바 있음(방통위 201909조사092 의결, '20.7.8)

가입 시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거나, 이미 약정기간을 채운 이용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요금할인 비율은 12% → 20% → **25%(현재)**로 변경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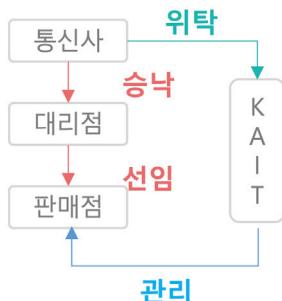
03.

단말기유통법 - 유통망 준수사항

사전승낙 제도

판매점은 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신청하면, 판매점과 거래를 원하는 대리점은 사업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해야 합니다.



※ 사전승낙을 득한 정식 매장주소
외에서는 신분증스캐너 사용불가



※ KAIT에서 위탁받아 승낙요건 구비여부 등을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여 사전승낙서 교부

이면계약 금지

이용자가 사업자 또는 유통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면계약)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식적인 가입신청서 외에 **별도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 또는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사적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통사/제조사 장려금의 일부를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거나 제휴사 협정을 통해 우회지급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



03.

단말기유통법 - 예외적 허용

이처럼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이외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하여 방통위는 일정한 경쟁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사 현상경품

단말기 구매자 대상 본사 차원의 추첨, 선착순 경품행사 등

- (예시) KT Shop에서 A단말 구매자에게 증정하는 추첨, 선착순 경품, B단말기 출시 행사에서 응모자에게 증정된 경품 등

운영절차 현장경품 행사 운영 이전에 **방통위에 사전신고 필요**

※ 행사관련 부서 및 공정경쟁담당과 사전협의 必

운영절차 사업자별 연간 운영할 수 있는 행사 **횟수와 금액은 제한됨**

※ 유통점의 자체적인 운영은 허용되지 않음

유통망 증정품

대리점, 판매점에서 증정하는 케이스, 필름 등 소액 사은품

증정품목 증정품의 가격은 **3만원 이내**의 필름, 케이스 등 **단말기 관련 물품**

유의사항 커피머신, 안마기 등 **단말기와 관련이 없는 전자제품은 허용되지 않음**

03.

단말기유통법 - 유의사항

필수 Check!

- **추가지원금 상한 15%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 금지**
- 요금할인(선택약정), 기기변경 **가입 거부** 금지
- 개통유형, 유통점 간 **부당하게 차별적 장려금 지급** 금지
-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연계 개별계약 체결** 금지
- 단말 대금과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
- 제휴 이벤트, 프로모션 시 위법성 사전 검토 필수



오인성광고 유의

- **초과지원금** 지급을 암시하는 광고
-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광고
- **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되는 할인을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할인 가격을 과장**하는 광고



※ 제휴카드 및 단말보상 혜택을
단말기 가격에 임의 산정하여 과장 광고



※ 초과지원금 지급을 암시하는 웹사이트

03.

단말기유통법 - 제재사항

법 위반 시 제재사항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신규 모집 금지 등

과징금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 부과

과태료 조사방해, 불법지원금 지급 등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

벌칙 위반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3억 원이하의 벌금



66

법 제정 이후 **매년 사실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제재수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99

불법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에 유의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규제 Risk를 최소화하고,**
통신시장 내 공정경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정보통신망법(불법스팸) - 개요

불법스팸?



새로운 휴대폰을 알아보던 사회초년생 A씨
얼마 후...



지긋지긋한 불법스팸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자꾸 문자를 보내는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 불법 스팸으로 규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이 진행되며
회사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습니다.



04.

정보통신망법(불법스팸) - 규제 대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회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



Q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 소멸 안내도 광고성 정보인가요?

A 계약 등에 따라 제공한 포인트 소멸 안내는 전송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단, 정기적인 잔여 포인트 안내는 서비스 촉진 목적이므로 광고성 정보입니다.




Q 영업사원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기념일 축하, 일부 문자도 광고성 정보인가요?

A 문구에 담긴 의미가 홍보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광고성 정보입니다.



예외적 허용



- 체결한 계약의 완성 또는 확인 목적 정보
- 서비스 사용설명, 보증/계약 변경 및 업데이트 안내
- 고객이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공익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정보



Q 유료 구입한 쿠폰 이용방법 / 멤버십 등급 변경 안내는 광고성 정보인가요?

A 쿠폰은 계약 관계에 따른 안내 의무, 멤버십 등급 변경은 정보 업데이트에 해당하므로 모두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Q 고객 상담 후 행사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보내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인가요?

A 고객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단, 지속적으로 발송하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04.

정보통신망법(불법스팸) - 주요 내용

명시적 사전 동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 누구든지 전자적 전자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 **명시적 동의** : 광고 수신 여부와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받는 동의



Q 고객이 회원가입 시 '문자서비스 수신동의'에 체크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해도 되나요?



A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수신자가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Q 여러 서비스를 '통합회원제'로 운영 시 서비스별로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통합회원이라도 제공 서비스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통합회원 가입 시 명시적으로 모든 서비스 내용 고지 후 포괄적 동의를 받는다면 개별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예외사항

- ▶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일한 재화** 등에 대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Q 거래관계를 통한 사전 동의 의무 예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대리점이 보내는 자점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대리점에서 휴대폰 관련 거래 후 6개월 이내에 거래한 것과 동일한 재화 관련 광고성 정보는 동의 없이 전송이 가능합니다.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됨
 ※ 수신거부/동의철회는 의사 표시부터 즉시 효력 발생
 ※ 원칙적으로 수신자에게 동의받은 **모든 영역에 효력 발생**



Q 수신거부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의사표시 발생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단, 수신거부를 하는데 1~2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Q 고객이 광고 문자 수신을 거부했을 때 전송한 매체만 거부처리를 하면 되나요?

A 수신거부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미도 있으므로 모든 광고성 정보 전송 거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기의무 준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또는 동의철회 의사표시를 쉽게할 수 있는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여야 함

CHECK!

-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 (광/고) (AD) 등 변칙 표기 금지
-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는 본문이 나오기 전 반드시 표시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시 ‘무료’ 등으로 금전적 비용 부담 없는 사실 명시
- 표시 의무사항을 이미지 파일로 전송 금지

수탁자 관리감독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 1.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 2.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



Q 전송될 광고문안 작성 또는 대상자 선정만 한 경우도 위탁에 해당하나요?



A 실질적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에 관여한 것이므로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Q 발송을 위한 환경만 제공해 주거나 지시에 따라 연락처로 이미 정해진 광고 내용 발송업무만 대행한 것도 포함되나요?



A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수탁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앱 푸쉬 광고

※ 앱 푸쉬 광고 : 앱에서 배너 등의 형태로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전송 알림 기능



Q 앱 푸쉬 알람 허용/허용안함 설정은 “수신동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앱 푸쉬 알람 허용 여부는 해당 기기에 수신된 정보를 화면에 띄워주겠다는 의미일 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앱 푸쉬 메시지는 길이가 짧아 표기의무 사항 전체를 보여주기 어려운데 문제가 없나요?



A 수신자의 기기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전송자는 우선 모두 표기하여 전송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수신자의 편의를 위해 클릭 시 표기의무 사항 등이 보이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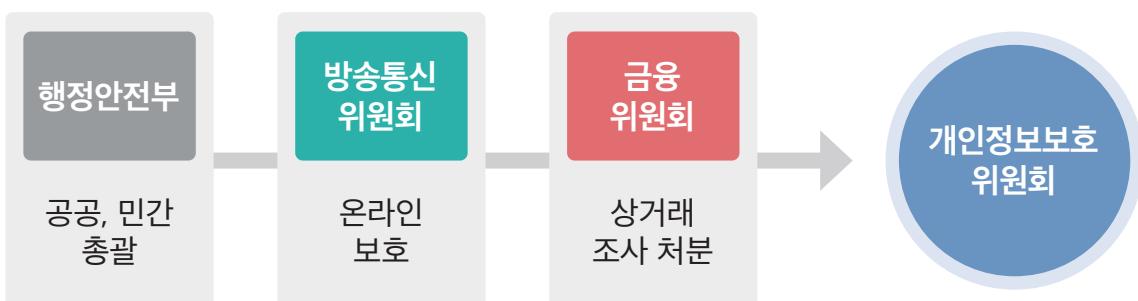
개인정보 관련법

- 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법령
- 02. 개인정보보호법

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정책, 제도, 법령을 주관하고 개인정보 관련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위원장 포함 9인(상임 2인/비상임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여러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정책 및 감독 기능을 통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5)

주요 업무

개인정보 정책, 제도 수립 및 집행

가명정보제도, 데이터표준화,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
관련 제반 정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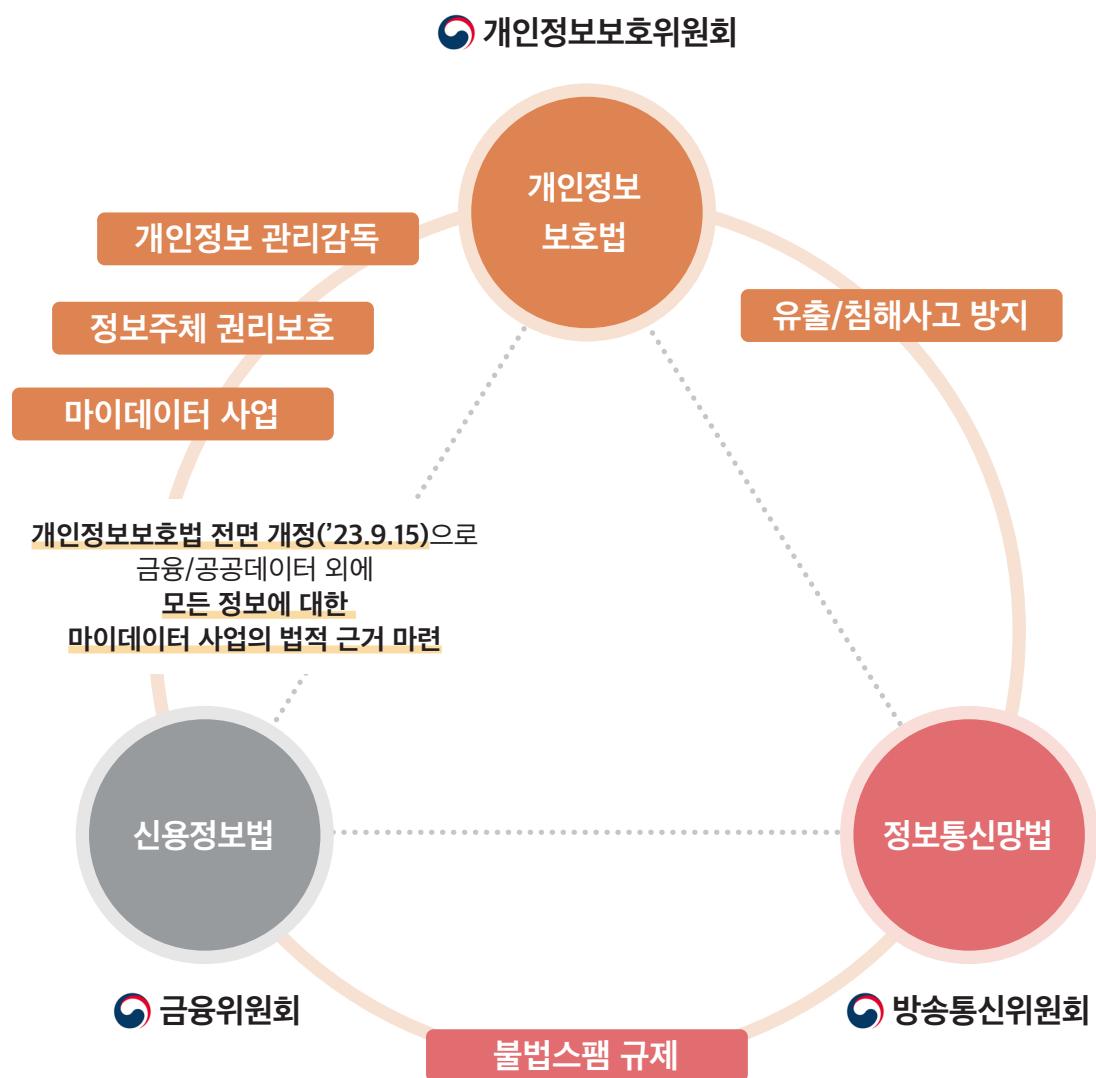
공공, 민간의 유출사고 조사 및 피해구제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개선권고

법령 해석 및 국제협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운용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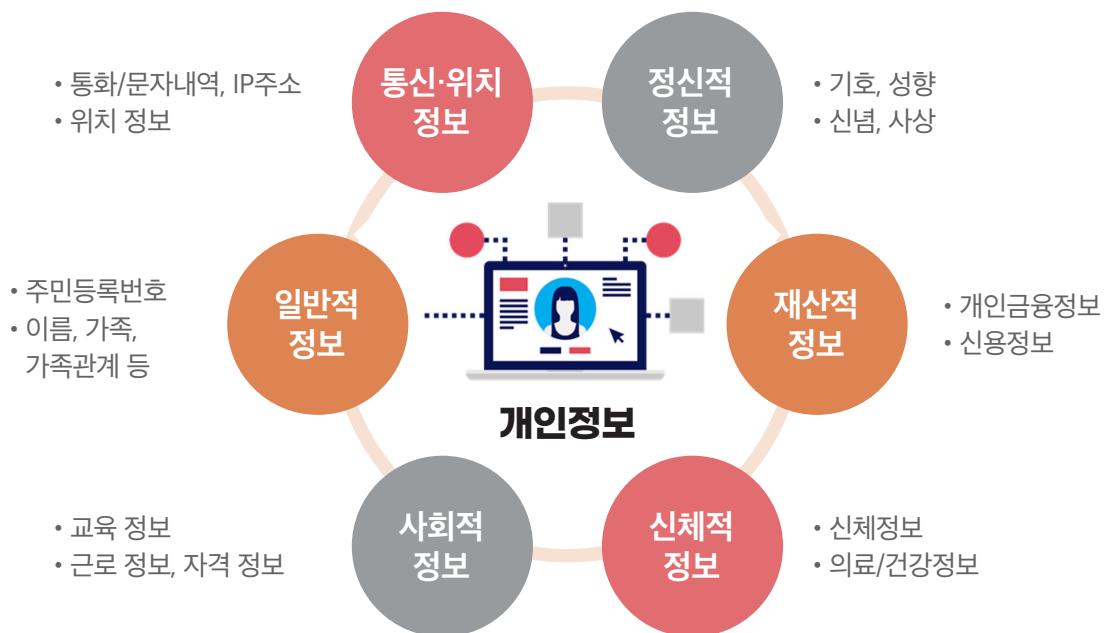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 기업이 모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02.

개인정보보호법 - 개요

개인정보의 개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
-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없음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가명정보

- 가명처리를 하여 추가 정보의 사용 및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02.

개인정보보호법 - 단계별 준수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

개인정보 처리단계 별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고의/부주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변조 및 훼손 등 법 위반행위 방지!



01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 필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
- **동의 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불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투명하게 공개**

02 저장·관리

-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 (**암호화** 등)

03 제공·위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용자 동의 필요
- 개인정보처리업무 제3자 위탁 시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철저** 시행

04 파기

- 수집/이용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해당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① 수집·이용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정보
수집원칙

-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 본질적 기능수행과 상관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선택동의 항목으로 구분
- ※ 최소한 여부 입증책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금지

-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가능**
(예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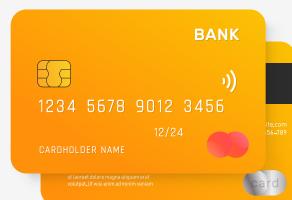
민감정보	사상, 건강, 범죄경력, 인종/민족 정보, 생체인식 정보(지문 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하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온라인 본인확인수단(예시)



휴대폰 본인확인



신용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① 수집·이용**이용자의 동의 획득****◆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

0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0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0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0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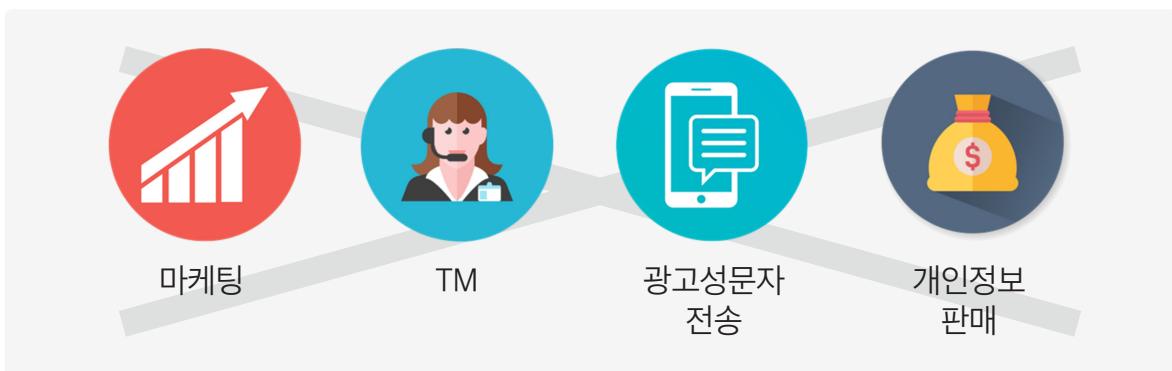
◆ 실질적 동의권 보장

-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① 수집·이용**개인정보 이용 제한**

◆ **마케팅, TM 등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① 수집·이용****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보유 기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등

Kate > Service Link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내 표준안'

① 수집·이용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웹/앱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함



통지 주기 및 기한

매년 1회 이상

※ 3분기 내(~9월) 이행, 불가피할 경우 연내(~12월) 이행

통지 내용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통지 방법

전자우편·서면·FAX·전화·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

② 저장·관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접근통제
(예시) OTP, 방화벽, IPS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 접속기록 정기적 확인·감독



- 개인정보취급자 PC보호조치
(예시) P2P/공유폴더 차단, 망분리



-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 이용자, 개인정보취급자



- 악성프로그램 감염 예방
(예시) 백신 설치 등



-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예시) 세션 타임 아웃 등



- 개인정보 저장, 전송 시 암호화



-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예시) 마스킹 적용 등



③ 제공·위탁**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이용자에게 일정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

- 0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0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0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0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0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있을 경우 限)

제3자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 이외의 모든 개인 / 법인 / 조직

제공 저장매체 등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제3자와의 공유

③ 제공·위탁**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배송, 홍보/마케팅, 고객상담 등), 문서에 의한 위탁계약을 맺어야 함**

- KT Legals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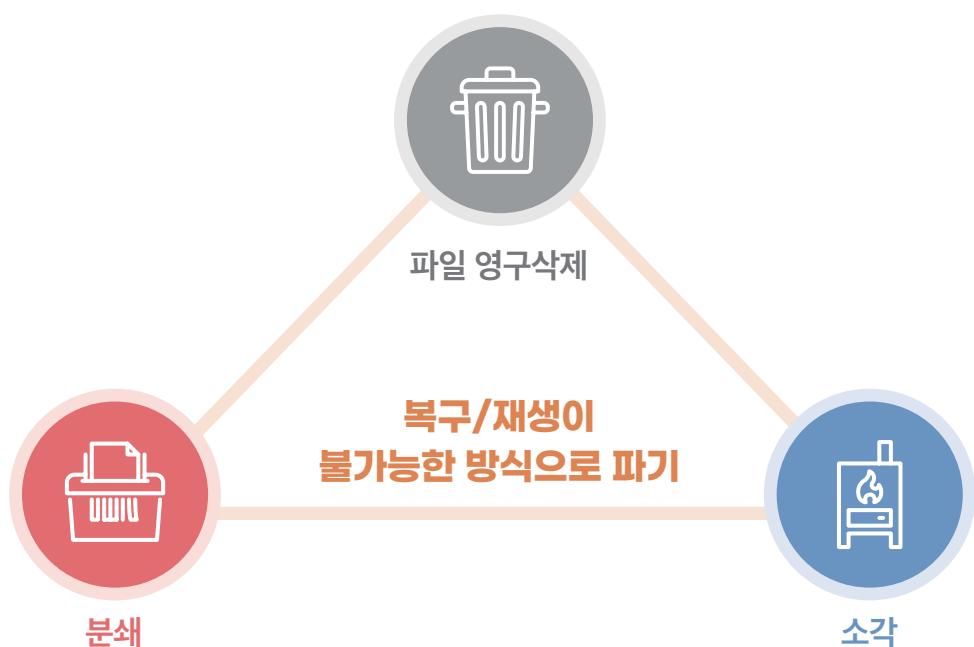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 교육**

- 수탁자 교육, 점검 관련 자료
 - Kate > Service Link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처리위탁 가이드라인

④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이용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해당 정보 파기



※ 다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 DB에 보관**

(예시) 해지고객 DB

※ 단, 별도 보관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 강화 필요**



02.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전송요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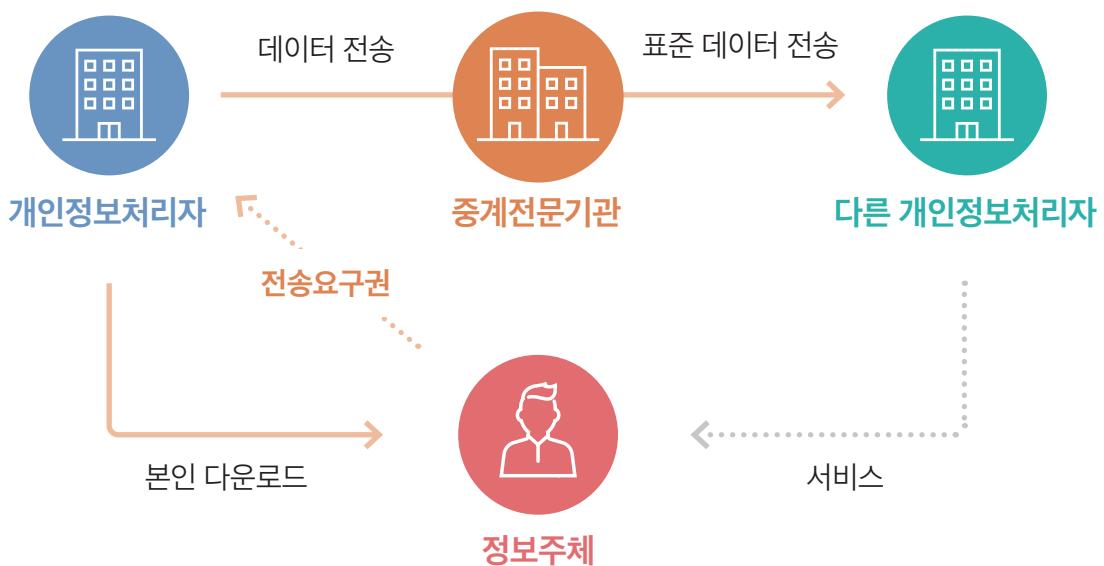
마이데이터란?

금융,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근거를 만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23.9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짐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24년 3.15 이후 시행 예정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전송 중단의 방법 등은 시행령 위임



- 국민 개개인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어 데이터경제 성장 기대

02.

개인정보보호법 - 제재사항

위반 시 주요 제재사항

'23.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비를 위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EU GDPR : 사안의 성격과 경증에 따라 전 세계 매출액의 2~4% 또는 1~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주요 위반행위

제재

동의 없이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포함)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한 경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
(단,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제외)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 단,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가능

